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04. 2. 3.(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12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정례회 및 제222회 임시회

○ 2003. 12. 18 :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4. 2. 2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기능·인력배분을 위하여

○ 조직전단 및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구와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 행정기구 기능 조정

- 기획관리실 「도정책신기획단」 신설 (한시기구)
-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 → 자치행정국으로 이관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기획관리실로 이관
-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잠사균이시험장」  
+ 종자보급소 → 「농산사업소」로 통합
- 축산위생연구소 + 내수면연구소 → 「축수산연구소」로 통합
- 여성회관 → 「여성발전센터」로 전환 및 기능 보장

### ○ 실·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 조정

- 기획관리실장 : 정보통신, 도정책신업무 추가
- 자치행정국장 : 총무업무 추가, 정보통신업무 삭제
- 농업기술원장 : 종자생산 및 잠사균이 시험검사 삭제
- 건설종합본부장 : 하천업무 삭제
- 축수산연구소장 : 내수면시험연구 추가
- 농산사업소장 : 종자생산·보급 및 잠사균이 시험검사 신설
- 여성발전센터소장 : 여성발전연구업무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분권 및 도정책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조 제4호의 신설에 의거 조직관리업무와  
 제6조 제11호의 신설에 의거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제6조 제12호의 신설에 의거 도정혁신기획단 기획관리실에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의거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국 으로 이관하고,  
 제7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0조 제13호 및 제23조·제24조의 개정, 제4장  
 제8절의 삭제에 따라

종자보급소 및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업무를 통합하여,

개정안 제4장 제5절에 농정국 농산사업소로 통폐합하는 것과,  
 제35조 제1항의 개정과 제37조 제11호의 삭제로  
 건설종합본부의 하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본 조례 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의 개정과 제4장  
 제7절의 삭제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고,

본 조례 제4장 제5절의 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평군의 출범에 따라 별표2의 중평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개정안 부칙으로 금번 기구·직제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통된 의견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킨 조례안이라고 보여지나,

금번 조직개편안의 기본방침과 중점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구·직제 개편으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총무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삭제하지 않는 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 5. 27일 진천소방서 설치를 승인받았고, 도의회로부터 진천소방서 청사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22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며,

2004년도 사업예산 확보하는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천소방서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인사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소관을 현행대로 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하며,

- 농업기술원 감사관이시험장의 업무는 시험연구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하고,
-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되는 내수면연구소의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을 삭제하고,
-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의 소관변경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 농정국 분장사무 중 잡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감사관이시험장 사무를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함.
-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의 통합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규칙에서 여성정책관실로 소관을 변경하려는 자원봉사업무의 경우 계속적으로 업무의 중요성과 봉사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행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으로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권고함.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4호, 제11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7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제9호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8.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사항

안 제23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를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12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

안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안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하고, 동장제7절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한다.

안 제46조 제1항중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을 위하여”를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

#### [별표 1]

#### 농업기술원 특화직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마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음성시설 농업시험장	음성군 관내
잠사군이시험장	청주시 관내

#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청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li> <li>3.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li> <li>4. 도청 주요정책개발·심의·조정</li> <li>5.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li> <li>6. 도청전반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li> <li>7.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군 재정지도</li> <li>8. 주요사업 투자실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li> <li>9.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li> <li>10. 통계의 처리와 유지관리</li> </ol>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청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국·도청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 에 관한 사항</li> <li>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li> <li>4. 도·시군 행정기구·직원 및 조직관리</li> <li>5.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li> <li>6.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li> <li>7.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li> <li>8.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li> <li>9. 주요사업 투자실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li> <li>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 전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li> <li>11. 정보통신 및 행정전자화에 관한 사항</li> <li>12. 도청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청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국·도청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 에 관한 사항</li> <li>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li> <li>4.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li> <li>5.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li> <li>6.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li> <li>7.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li> <li>8. 주요사업 투자실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li> <li>9.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li> <li>10. 도청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선거·국 만투표에 관한 사항</li> <li>2.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li> <li>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li> <li>5. 행정능률 향상,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li> <li>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 와 기부금품모집 통계에 관한 사항</li> <li>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li> <li>8. 지역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li> <li>9. 전자행정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li> <li>10.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li> </ol>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의견·행사, 보안, 문서 및 청 사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 생에 관한 사항</li> <li>3.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분 향에 관한 사항</li> <li>4.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 정·협의</li> <li>5. 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 무에 관한 사항</li> <li>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 와 기부금품모집 통계에 관한 사항</li> <li>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li> <li>8.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li> </ol>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분 향에 관한 사항</li> <li>2.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 정·협의</li> <li>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li> <li>5. 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 무에 관한 사항</li> <li>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 와 기부금품모집 통계에 관한 사항</li> <li>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li> <li>8. 정보통신 및 행정전자화에 관한사항</li> <li>9.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li> </ol>
<p>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2. (생략)</li> <li>13. 보급종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ol>	<p>제10조(농정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2. (현행과 같음)</li> <li>13. 종자 및 각종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li> </ol>	<p>제10조(농정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2. (현행과 같음)</li> <li>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li> </ol>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장 직속기관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1조 - 제22조 (생략) 제23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8 (생략)</li> <li>9. 우량 작종·상묘의 생산 과 시험 검사와 및 전정작사용 기계유류 관리</li> <li>10. 미곡, 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li> <li>11. - 13 (생략)</li> </ol> <p>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 (생략) ②기술원에 작종의 개발보급, 농산물위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조사관이시험장 및 종자생산시험장을 둔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조사관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절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p> <p>제4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제43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4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li> <li>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li> <li>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li> <li>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li> </ol> <p>제45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장 직속기관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1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소관사무) ..... 1. - 8 (현행과 같음) &lt;삭제&gt; &lt;삭제&gt; 9 - 11 (현행과 같음)</p> <p>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 (현행과 같음) &lt;삭제&gt; ②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절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p> <p>제4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보급 및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수산연구소 (이하 "축수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수산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제43조(소장) 축수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4조(소관사무) 축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li> <li>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li> <li>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li> <li>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li> <li>5. 내수면 개발 및 담수어 양식에 관한 사항</li> </ol> <p>제45조(지소) 축수산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장 직속기관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1조 - 제22조 (생략) 제23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8 (생략) 9 (현행과 같음) (기정안과 같음) 10 - 12 (생략)</p> <p>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 (생략) ②기술원에 작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조사관이시험장을 둔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조사관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align="center">&lt;신설&gt;</p> <p align="center">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 (생략)</p>	<p align="center">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p> <p>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위생 및 보급중의 생산·풍급을 원활히 하고 무관청중의 생산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이라한다를 설치한다.</p> <p>②(생략)</p> <p>제47조(소장)(생략)</p> <p>제48조(소관사무)(생략)</p> <p>1 농산물 위생생산 및 품질개선에 관한사항 2 농산물 유통중차 생산·보급에관한사항 3 작물·삼묘의 생산·보급과 시험경사에 관한사항 4 기능성양장물 개발 및 기능성양장물생산</p> <p align="center">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생략)</p>	<p align="center">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p> <p>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위생 및 보급중의 생산·풍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이라한다)를 설치한다.</p> <p>②(생략)</p> <p>제47조(소장)(생략)</p> <p>제48조(소관사무)(생략)</p> <p>1 농산물 위생생산 및 품질개선에 관한사항 2 농산물 유통중차 생산·보급에관한사항</p> <p align="center">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개정안과 같음)</p>
<p align="center">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p> <p>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p> <p>제5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4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2 담수어 종묘생산 보급 및 피규어종양식 3 지역 특색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 4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조사 5 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p> <p align="center">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p> <p>제55조(설치)(생략)</p> <p>제56조(소장)(생략)</p> <p>제57조(소관사무)(생략)</p>	<p align="center">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p> <p align="center">&lt;삭제&gt;</p> <p>제52조(설치) &lt;삭제&gt;</p> <p>제53조(소장) &lt;삭제&gt;</p> <p>제54조(소관사무) &lt;삭제&gt;</p> <p align="center">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p> <p align="center">&lt;삭제&gt;</p> <p>제55조(설치) &lt;삭제&gt;</p> <p>제56조(소장) &lt;삭제&gt;</p> <p>제57조(소관사무) &lt;삭제&gt;</p> <p align="center">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p> <p>②충청북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p>	<p align="center">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p> <p>제55조(설치) (현행과 같음)</p> <p>제56조(소장) (현행과 같음)</p> <p>제5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p> <p align="center">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p> <p align="center">&lt;삭제&gt;</p> <p align="center">(개정안과 같음)</p> <p align="center">부칙</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p> <p align="center">&lt;삭제&gt;</p> <p align="center">&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⑤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호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관중 “출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출산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위임대상기관관중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한다.</p> <p>⑥충청북도지역정보회충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p> <p>⑦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부장”을 각각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p> <p>⑧충청북도출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출산위생연구소”를 각각 “출산산연구소”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출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출산산연구소장”으로 한다.</p> <p>⑨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하고, 제2조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lt;삭제&gt;</p> <p>(개정안과 같음)</p> <p>&lt;삭제&gt;</p> <p>② (개정안과 같음)</p> <p>&lt;삭제&gt;</p> <p>③ (개정안과 같음)</p>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7.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8.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9.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0.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2.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5. 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8.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23조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잠사군이시험장을 둔다

동조제3항을 제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군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5조제1항중 “도로·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으로 한다.

제37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하고, 동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한다.

제4장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제46조 내지 제48조)을 동장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제52조 내지 제54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3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 기술인력 양성
3.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장제5절에 충청북도농산사업소(제46조 내지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제47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농산사업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중 충청북도중평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충청북도중평소방서	중평군 관내	중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임대상기관관중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한다.

②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부장”을 각각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하고,

제2조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직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마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음성시설훈농업시험장	음성군 관내
잠시군이시험장	청주시 관내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정의 종합기획 조정</u>에 관한 사항</li> <li>2. <u>광역조정</u>에 관한 사항</li> <li>3. <u>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u></li> <li>4. <u>도정 주요정책개발·심의·조정</u></li> <li>5. <u>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li> <li>6. <u>도정전반의 정책연구</u>에 관한 사항</li> <li>7. <u>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u></li> <li>8. <u>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u></li> <li>9. <u>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u>에 관한 사항</li> <li>10. <u>통계의 처리와 유지관리</u></li> </ol>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정의 종합기획 조정</u>에 관한 사항</li> <li>2. <u>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u>에 관한 사항</li> <li>3. <u>광역조정</u>에 관한 사항</li> <li>4. <u>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u></li> <li>5. <u>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li> <li>6. <u>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u></li> <li>7. <u>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u></li> <li>8. <u>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u></li> <li>9. <u>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u>에 관한 사항</li> <li>10. <u>도정혁신기획단 운영</u>에 관한 사항</li> </ol>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u>에 관한 사항</li> <li>2. <u>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u></li> <li>3. <u>도·시군 조직관리</u>에 관한 사항</li> <li>4. <u>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u></li> <li>5. <u>행정능률 향상, 민원업무</u>에 관한 사항</li> <li>6. <u>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u>에 관한 사항</li> <li>7. <u>예산의 지출·결산 업무</u></li> <li>8. <u>지역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u></li> <li>9. <u>전산행정 및 행정통신</u>에 관한 사항</li> <li>10. <u>민방위비상대책</u>에 관한 사항</li> </ol>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u>에 관한 사항</li> <li>2. <u>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u></li> <li>3. <u>도·시군 조직관리</u>에 관한 사항</li> <li>4. <u>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u></li> <li>5. <u>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무</u>에 관한 사항</li> <li>6. <u>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u>에 관한 사항</li> <li>7. <u>예산의 지출·결산 업무</u></li> <li>8. <u>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u>에 관한 사항</li> <li>9. <u>민방위비상대책</u>에 관한 사항</li> </ol>

현행	개정안
<p>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보급종 종자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u></p>	<p>제10조(농정국)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u></p>
<p>제3장 직속 기관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1조 - 제22조 (생략)                      제23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9. (생략)                      10. <u>미곡, 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                      종자 생산 보급</u>                      11. - 13. (생략)</p>	<p>제3장 직속 기관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1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소관사무) .....                      1. - 9. (현행과 같음)                      &lt;삭제&gt;                      10. - 12. (현행과 같음)</p>
<p>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 (생략)                      ② <u>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 및 종자                      생산시험장을 둔다.</u>                      ③ <u>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                      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                      이시험장을 둔다.</u>                      ③ <u>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제4장 사업소</p>	<p>제4장 사업소</p>
<p>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제3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                      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증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이하 "건설종합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36조(본부장) (생략)                      제37조(소관사무) 건설종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0. (생략)                      11. <u>하천시설공사 및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u>                      제38조(지소) (생략)</p>	<p>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제35조(설치) ① .....                      .....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본부장) (현행과 같음)                      제37조(소관사무) .....                      .....                      1. - 10. (현행과 같음)                      &lt;삭제&gt;                      제38조(지소) (현행과 같음)</p>

현 해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b></p> <p>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p> <p>제47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농산사업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8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p>
<p>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 공동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p>제47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8조(소관사무) 여성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기술인력 양성 5. 각종시설물 대여사업 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b></p> <p>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 공동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p>제53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4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 기술인력 양성 3.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 align="center"><b>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b></p> <p><b>제52조(설치)</b>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p> <p><b>제53조(소장)</b>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54조(소관사무)</b>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li> <li>2. 담수어 종묘생산 보급 및 회귀어종 양식</li> <li>3.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li> <li>4.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 조사</li> <li>5. 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li> </ol>	<p align="center"><b>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b></p> <p><b>제55조(설치)</b> (현행과 같음)</p> <p><b>제56조(소장)</b> (현행과 같음)</p> <p><b>제57조(소관사무)</b> (현행과 같음)</p>
<p align="center"><b>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b></p> <p><b>제55조(설치)</b>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종 종자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자보급소(이하 "종자보급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종자보급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p> <p><b>제56조(소장)</b> 종자보급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57조(소관사무)</b> 종자보급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급종자 생산계획 수립</li> <li>2.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채종포장 지정 및 포장관리</li> <li>3.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종자수매 계획 수립 및 수매</li> <li>4. 기타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정선</li> <li>5. 종자보급계획수립 및 예시</li> <li>6. 보급종자 민원사항 처리(옥수수는 전국)</li> <li>7. 보급종자 홍보</li> </ol>	<p align="center">&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직무시험장·검사관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미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음성시설 농업시험장	음성군 관내
감사관이시험장	충주시 관내
종자생산시험장	진천군 관내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직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미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음성시설 농업시험장	음성군 관내
감사관이시험장	충주시 관내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충주동부 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상곡구, 청원군중 내수읍 북이면, 남양면, 괴곡면, 문익면, 남양면, 미원면, 오장면 일원,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충주서부 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홍익구, 청원군중 옥산면, 강내면, 경외면, 봉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시소방서	제천시 관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괴산군 소방서	괴산군 관내	괴산군,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음성군 소방서	음성군 관내	음성군 일원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충주동부 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상곡구, 청원군중 내수읍 북이면, 남양면, 괴곡면, 문익면, 남양면, 미원면, 오장면 일원,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충주서부 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홍익구, 청원군중 옥산면, 강내면, 경외면, 봉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시소방서	제천시 관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소방서	진천군 관내	진천군, 괴산군,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소방서	음성군 관내	음성군 일원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⑥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